

구조조정대상부동산등세액감면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즉 시
신 청 인	①상호 또는 법인명		②사업자등록번호	
	③대표자성명		④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	
	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		
⑥과 세 연 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감면받고자 하는 세액				
⑦양도소득금액	⑧ 양 도 당 시 의 기 준 시 가	⑨ 취 득 당 시 의 기 준 시 가	⑩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	
⑪5년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	⑫감 면 비 율	⑬(⑪×⑫)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	⑭감 면 받 을 세 액	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[☐ 제40조제2항 ☐ 제99조제4항]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
세무서장 귀하				
구비서류 : 당해 감면관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제출 서류 각 1부				수수료 없음

작성요령

1. 세액감면신청서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⑦란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기재합니다.
3. ⑧내지 ⑩란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4. ⑪란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⑦란 양도소득금액을 기재하고,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
$$\text{양도소득금액(⑦)} \times \frac{\left[\begin{array}{c} \text{취득일부터 5년이} \\ \text{되는 날의 기준시가} \end{array} \right] - \left[\begin{array}{c} \text{취득당시의} \\ \text{기준시가} \end{array} \right]}{\left[\begin{array}{c} \text{양도당시의} \\ \text{기준시가} \end{array} \right] - \left[\begin{array}{c} \text{취득당시의} \\ \text{기준시가} \end{array} \right]}$$

5. ⑫란 감면비율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기재하고,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기재합니다.
6. ⑭란 감면받을 세액은 ⑬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